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건
축
물
관
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하는 공공주택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없더라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제1호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촉진지구 조성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 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 호나목 또는 <u>다목</u> 에 따른 특 수구조 건축물 2. 3. (생략)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 축물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1. ----- ----- <u>라목</u> ----- ----- 2. 3.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 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 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 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 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설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 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를 해체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u>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촉진지구 조성사업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 제4항-----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연 락 처	(044) 201 - 4989